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강동구 제5선거구,
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영철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
에서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신설하여
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.

○ 그러나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
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바, 단순히 시행일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
개정법령의 적용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함이 지적되었습니다.

- 이에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및 과거에 발생하여 개정된 법령 시행 당시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- 따라서 부칙 제2조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, 학교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하여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